

수 신 : 전 감사인
참 조 :
제 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통보

1. 귀 감사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이 2010년 12월 7일자로 붙임과 같이 고시(금융위원회고시제2010-41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규정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icpa.or.kr>)의 ①KICPA 전문정보 → 법규자료(최근제개정정보) 또는 ②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끝.

한국공인회계사회



(붙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

1. 개정 사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의 개정(‘09.12.31)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고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는 K-IFRS(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50%이상)·관계회사(20~50%)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결산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施惠的 성격의 개정사항임

□ IFRS 정보이용자를 위한 분·반기 지분법 정보 주석기재

-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의 경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2011~12년 중에는 한시적으로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 <개정 이유> 과도한 결산부담 완화를 위해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2년간 유예된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지분법 정보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음
- 그러나, 동 지분법 정보를 IFRS 정보이용자(예시 : 투자자 등)들이 요구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도록 보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 2 장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범위 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 2 장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범위 등</p> <p>제6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 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영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방법” 이란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제1027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0 947호) 제23조에 따라 반기보 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 준으로 기재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공 시한다.</p>	<p>-시행령위 임사항반영 (영 §7조 의2② 개정 사항 반영,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을 적용하 는 지배회 사의 재무 제표 작성 방법 규정)</p>
<p>제 3 장 감사인의 지정</p> <p>제10조(지정대상회사) ①~⑦ (생략)</p> <p>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 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p>	<p>제 3 장 감사인의 지정</p> <p>제10조(지정대상회사) ①~⑦ (현행과 같음)</p> <p>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 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 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p>	<p>-조문정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받는 회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한다.</p> <p>⑨~⑩ (생략)</p> <p>제13조(지정방법등) ①~② (생략)</p> <p>③ 1~6 (생략)</p> <p>7. 증선위는 회사가 제10조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신 설></p>	<p>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받는 회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한다.</p> <p>⑨~⑩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정방법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1~6 (현행과 같음)</p> <p>7. 증선위는 회사가 제10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p>	<p>-조문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u>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적용례)</u>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